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for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by Digital Republication and Transmission between Library and Library

홍 재 현(Jae-Hyun Hong)**

목 차

- | | |
|--------------------------------------|--|
| 1. 서론 | 3. 1 복제·전송 도서관 |
| 2.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의 국제적 동향 | 3. 2 전송받은 도서관 |
| 2. 1 국제규범 | 3. 3 보상금제도 |
| 2. 2 미국 | 3. 4 권리보호조치 |
| 2. 3 유럽연합 | 4. 면책을 벗어난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 |
| 3.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관한 우리나라 도서관 면책 규정 분석 |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지식·정보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이 필수적이다.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먼저 국제규범(베른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 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 promote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information user and to rais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digital network environment,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by digital republication and transmission between library and library is indispensable. The policy for cooperative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by digital republication and transmission between library and library is influenced by the regulation of library exemption in copyright law.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s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copyright in international norm(Berne Convention, Agreement on TRIPs and WCT),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 Directive. And then this study analyzes and examines the regulation of library exemption in the revised Copyright Act of Korea in 2003, library remuneration system, technical measures for protection of copyright, etc. Also this paper points out related problems. As a results of the legal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necessary measures and the corresponding plans to the revised Copyright Act of Korea in 2003 to promote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by digital republication and transmission between library and library

키워드: 디지털 복제, 도서관 면책, 저작권법, 전송, 보상금제도

Digital Reproduction, Library Exemption, Copyright Law, Transmission, Remuneration System

* 이 논문은 2003년 12월 12일 국회도서관 학술정보교류협의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jhhong@joongbu.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3월 11일

1. 서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이용자들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도서관에 쉽게 접근해서 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필요한 정보·자료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제공받기를 원한다. 도서관들은 이에 부합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도서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방대한 학술정보·자료를 모두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마다 각기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같은 정보·자료를 수집·가공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업무의 중복 및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이용자들의 원문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정보·지식의 창출을 도모하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들이 취할 수 있는 최우선의 타개책은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¹⁾이다.

그런데 도서관들이 지향하는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간의 복제·전송 행위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도서관이 구입하여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자료가 디지털화 되면 아날로그 형태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

의 개연성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도서관에서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전송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라는 양측의 균형 유지와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1986년 저작권법은 이들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을 도서관 면책 규정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두 번에 걸쳐 법을 개정하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첫 번째 저작권법 개정은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대처하면서 디지털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개정된 2000년 저작권법이다. 2000년 개정저작권법에서는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관한 제한을 법에 수용하였다. 그렇지만 도서관간 전송을 지나치게 확대한 나머지 무제한의 복제·전송을 허용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그 후속 조치로 취해진 2000년 개정저작권법시행령에서는 복제할 수 있는 도서관을 일부 도서관으로 제한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성급하고 무책임한 일련의 법적 조치들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비판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저작권법간의 갈등의 빌미가 되어 왔다. 그러자 드러난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²⁾이 2001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난 2년여에 걸친 개정 노력 끝에 개정안이 2003년 4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어 동년 5월 27일에 드디어 저작권법의 개정이 공포 됨으로써 도

1) 본 논문에서 자료의 '공동이용'이라는 용어를 '공유' 대신에 채용한 것은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자칫 '공유'라는 개념은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임을 밝힌다.

2) 개정저작권법틀안은 2001년 6월에 입법 예고를(<http://www.mct.go.kr>), 거친 후 2001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서관간 복제·전송 문제는 우선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2003년 개정저작권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도서관 면책 규정은 그 조문이 길고 구조가 복잡하며 바뀐 내용도 많다. 더욱이 이 번 개정법에서는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을 허용하기 위하여 세계 초유의 도서관 보상금제도가 획기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면 도서관들은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해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2003년 개정법상의 어떤 규정의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특히 도서관간 복제·전송을 위해 새로이 규율된 도서관 보상금제도에란 무엇이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또한 도서관 보상금제도와 더불어 권리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기술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아울러 면책 사유를 벗어난 도서관간 복제·전송 행위에 의해 디지털 정보의 공동 이용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전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의 제 문제는 도서관의 정보 관리자 또는 상호대차서비스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서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서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저작권법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의 문제는 핫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에 초점을 맞춘 저작권 연구는 이제 시작이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 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먼저 국제규범,

미국,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관한 면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의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2003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첫째, 복제·전송하는 도서관에서의 관련 면책 규정 둘째, 전송받은 도서관에서의 관련 면책 규정 셋째, 보상금제도 넷째, 권리보호조치 다섯째, 면책 사유를 벗어난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대한 개정법의 면책 규정과 보상금제도, 권리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어 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 및 도서관의 저작권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서관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저작권 지식을 강화하고 향후 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의 저작권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개정된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 중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관한 규율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도서관 면책 규정은 간략히 다루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도서관 면책 규정과 보상금제도에 관한 인식,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도서관 사서, 이용자, 출판업계 등 각계 각층을 대상

으로 한 저작권 규정 및 문제점에 관한 의견 분석은 향후 또 하나의 연구주제로 삼아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후속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로 우리 나라의 2003년/2000년 개정저작권법과 2003년/2000년 개정 저작권법시행령의 관련 조문 자체와 국내의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헌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기타 관련단체들의 자료도 참조하였고,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가가 발표하는 설명회에 참가하여 수렴한 의견도 반영하였다. 또한 전문가와의 전화상담도 병행하였다.

2.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의 국제적 동향³⁾

2. 1 국제 규범

지식정보사회에서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와 동시에 적절한 저작권 제한의 보장이라는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권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국의 저작권법의 정책 결정에 기준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규범으로는 베른협약(the Berne Convention),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협정이라 한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 조약(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이하 WCT라 한다)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 규범에서는 종래의 아날로그 환경과 크게 변화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을 수용하기 위해 협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여 저작물 생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국제 규범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절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베른협약, TRIPs 협정, WCT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이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에서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베른협약, TRIPs협정, WCT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기의 TRIPs 협정이나 WCT는 이른바 3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를 그 조약하의 권리들의 제한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WCT는 베른 협약하의 권리들에 대해서도 같은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음도 주시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입각해서 체결국들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제한과 예외를 창안해 낼 수 있다고 본다.⁵⁾ 한편 베른협약

3) 본 연구는 홍재현(2002)의 도서관 면책 전반에 걸친 국제적 동향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초점을 맞추어 도서관 면책 동향을 검토한 것이다.
홍재현, 2002.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3) : 327-357.

〈표 1〉 베른협약, TRIPs협정, WCT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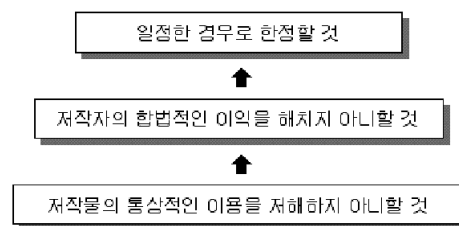
국제규범	조 항	내 용
베른협약	제9조 (2)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TRIPs 협 정	제13조 제한과 예외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WCT	제10조 제한과 예외	(1) 계약 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계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은 현재까지 이 3단계 테스트를 복제권의 제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TRIPs 협정이나 WCT 등의 국제 규범에 적용되고 있는 3단계 테스트란 무엇인가. 그 내용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이와 같은 3단계 테스트의 기준에 입각하면, 디지털 복제나 전송에 대한 권리 제한은 1단계인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될 경우에는

권리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디지털 복제나 전송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이러한 행위가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1단계, 2단계를 모두 통과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사용료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



〈그림 1〉 저작권 제한의 3단계 테스트

4)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http://www.cerebralaw.com/berne.htm>>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http://www.ebu.ch/departments/legal/pdf/leg_ref_wto_agreement_trips_151293.pdf>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http://www.copyright.gov/wipo/treaty1.html>>

5) 이영아. 2002. “디지털 시대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및 3단계 테스트 : 개관”. 계간 저작권, 여름호, 58 : 108-119.

서 이와 같은 엄격한 3단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각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가 적용될 수 없음을 제약국들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한편 후술할 우리 나라의 개정된 제28조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 이상에서 언급한 국제적인 규범에서 적용하는 3단계 테스트의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는 언급을 미루고자 한다. 우리의 개정법은 국내외적으로 지적 받은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여 개정된 상태이고 또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들이 법 준수를 하는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될 법은 국내법이다. 다만 국내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 3단계 테스트의 기준에 위배된다고 WTO에 제소될 경우, 우리 도서관은 국제적장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라 그 때 적절히 대처하면 될 것이다.

2. 2 미국

미국 저작권법은 도서관 면책을 제108조에서 규율하고 있다.⁶⁾ 본 연구와 관련한 도서관 간 복제·전송에 관한 면책 사유가 미국의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의 저작권법은 세계 각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현실은 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의 통상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토 결과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명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제108조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시대 미국의 도서관들이 면책을 부여받고 있는 일정한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이처럼 미국 저작권법은 보존 목적, 대체 목적,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의 경우 상기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디지털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관한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보선진국인 미국에서 많은 도서관들은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관 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부여를 주장하거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자국의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에 주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 상 도서관이 일정한 조건에 한하여 면책을 적용 받고 있다 할지라도, 도서관 간 디지털 복제·전송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이다.

2. 3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라 한

6)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copyright.or.kr/copy/main.asp?ht=.law/law__b__ame.htm&ca=6&se=1>

〈표 2〉 미국 저작권법상 디지털 복제·전송과 관련한 도서관 면책 규정

면책 조 건	면책 유 형	관 내 (소장자료)		도서관간	안 방
		아날로그자료 ↓ 아날로그복제	아날로그자료 ↓ 디지털 복제	디지털 복제·전송	디지털 복제·전송
■ 자체 보존 목적인 경우 【제108조 (b)】		○ (3부까지 허용)	○ (3부까지 허용)	X	X
■ 대체 목적인 경우 【동조 (c) 항】					
• 파손, 훼손, 분실된 경우		○ (3부까지 허용)	○ (3부까지 허용)	X	X
• 저장 형식을 표시할 수 있는 기계나 장치가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 경우					
■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에 해당되는 경우【동조 (h) 항】 -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이 된 저작물*					
• 연구, 학문, 조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	X	X
• 저작물이 통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논문이나 기사 일부분의 1부 복제인 경우 【동조 (d) 항】		○ (다른 도서관의 소장자료 이용 가능)	X	X	X
• 개인적인 연구, 학문, 조사 목적					
•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 게시					
■ 저작물이 절판된 경우 【동조 (e) 항】		○ (다른 도서관의 소장자료 이용 가능)	X	X	X
• 학문 목적					
•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					
•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 게시					

*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은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에 의해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보호됨.

다)은 2001년 5월 22일에 발표된 『정보사회에
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유럽
공동체 지침(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⁷⁾, 이하 EU 지침이라 한
다』의 제2장 제5조에서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7)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http://www.europa.eu.int/eur-lex/pri/en/oj/dat/2001/l_167/l_16720010622en00100019.pdf)

관한 도서관 면책을 규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2장 제5조에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관한 면책 조문이 수용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U 지침은 다른 도서관에서의 열람 목적을 위한 도서관간 복제·전송에는 그 어떤 면책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EU 지침은 관내에서의 이용을 위해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특별한 경우의 디지털 복제는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그러한 면책의 부여는 도서관이 행하는 디지털 복제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이 경우 면책 대상이 도서관(기록보존소, 박물관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들은 궁중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한편 계약국들은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 도서를 도서관 내에서 전용단말기를 통해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제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표 3>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관한 우리나라 도서관 면책 규정 분석

3. 1 복제·전송도서관

1) 다른 도서관에서의 열람목적에 위한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나 전송을 대폭 제한하여 면책한 이유는 무엇인가.

2000년 개정저작권법⁸⁾은 제28조 제2항에 의해 어느 도서관이든 디지털화를 하고 열람 목적을 위해 도서관간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2000년 개정법은 1986년 저작권법⁹⁾ 전면 개정 이후 15년이 지나 일부 개정된 것인데, 그 의도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대응하며 디지털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함이었다. 그런데 2000년 개정법은 지나치게 도서관간 복제·전송을 확대시키고 말았다. 그로 인하여 다른 도서관에서의 그 도서 등에 대한 구매 수요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출판권자 포함)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가능성

<표 3> EU 지침의 디지털 복제·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

면 책 조 건	면 책 유 형	관 내 (소장자료)		도서관간	관 외
		아날로그 ↓ 디지털 복제	디지털 ↓ 디지털 복제	디지털 복제 · 전송	디지털 복제 · 전송
■ 특정한 경우【제5조 (c)】 직 · 간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 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	X	X

* EU 회원국들은 비판매용 디지털저작물의 경우에 자체 보존을 목적으로 다른 형태의 포맷이나 매체 변환 등을 위한 디지털 복제를 허용하는 입법은 가능할 것임.

8) 2000년 개정저작권법은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된 후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9) 우리나라의 도서관 면책 규정은 최초의 저작권법인 1957년 저작권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후 1986년에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규정되었다.

이 매우 크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베른협약이나 TRIPs 협정의 위배 및 심지어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까지 제기시켰다.¹⁰⁾

그러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서둘러 행해졌다. 그리하여 2000년 개정저작권법시행령에서는 무제한 전송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의 일부 도서관에 국한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위임 입법의 한계에 위배된다¹¹⁾는 우려의 소리를 냈다. 뿐만 아니라 이제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디지털도서관을 구현할 수 있으려니 기대하고 있던 사립대학도서관을 위시한 많은 도서관들은 오히려 디지털화 사업이 위축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복제·전송할 수 있는 도서관과 그렇지 못한 도서관간에는 비논리적인 차별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묘한 갈등기류마저 생기게 되었다.

결국 도서관과 저작권간의 이러한 갈등은 입법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디지털 환경하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하

여 정부는 2003년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0년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국제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시키고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서관간의 복제·전송 등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2) 복잡한 이해과정의 조정을 거쳐 개정된 2003년 저작권법상 도서관간 복제·전송이 면책 대상에 포함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정한 조건은 무엇인가.

2000년 개정법은 도서관내와 도서관간의 복제·전송을 구분하지 않고 면책을 허용하였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디지털도서관 구축 사업의 장애를 일시에 제거하려는 단순한 발상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정책이었다.¹²⁾ 이에 2003년 개정법은 관내 전송과 관외 전송을 구분하여 관내열람을 위한 디지털 복제·전송은 제2항¹³⁾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도서관간 복제·전송은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도록 하였다. 제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년 개정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신설)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임원선. 2003.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가을호, 63 : 2-8.

11) 許煥成. 2000. 『2000 新著作權法 逐條概說』. 서울: 저작권아카데미.

12) 최경수. 2003.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 2003년 개정 저작권법(상)". 계간 저작권, 가을호, 59 : 43-59.

13)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상기의 신설 조항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도서관간 복제·전송의 면책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열람’ 목적
- 보관된 도서
-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발행 후 ‘5년’ 경과

이처럼 새 규정은 종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간의 복제·전송을 대폭적으로 제한하여 일정한 조건과 범위 내에서 면책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도서관과 저작권자의 양측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새 규정의 면책 기준에서 주시해야 할 점이 있다. 판매용 도서의 도서관간 복제·전송의 면책 대상 결정 시, 그 잣대가 되는 발행 후 ‘5년’이라는 명시적 기간은 어떤 근거 하에 산출된 수치인가. 또한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생각할 때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통상적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법에서 5년으로 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통상적 이용기간의 경과를 판단하는 연도를 5년이라고 단정지는 그 근거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발행 후 5년이라는 수치를 합의를 수치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그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인위적임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이 5년이라는 연도기준에 대

해 객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3) 도서관들이 상호간에 열람목적 위한 디지털 복제·전송의 면책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추가적으로 어떤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2000년 개정법은 도서관간의 무제한의 복제 전송으로 저작권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호된 질책에 무방비 상태였다. 디지털 환경을 수용하면서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해결책의 모색이 시급했다. 2003년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5항을 신설하였다.

새로이 규정된 제5항의 핵심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한 후에 비로소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도서관간 복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보상금 제도는 종전법에서는 학교 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제23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제47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제48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50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에 대한 보상(제65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68조)에 적용되던 제도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은 법정허락제도를 확대하여 제28조에 보상금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정허락(legal license)제도’는 저작권자의 허락(permission)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 입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결국 개정법은 인터넷 시대 도서관간의 전송에 따른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의 손실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도서관의 공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법정허락제도의 확대를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4)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에 의한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의 면책 허용이 가져다 줄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디지털도서관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전국적으로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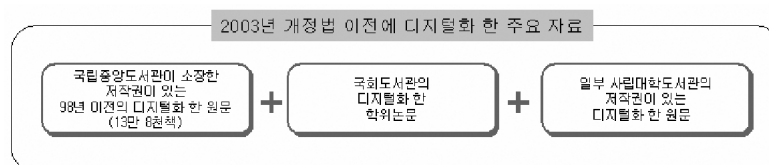
셋째, 우리 도서관계가 눈치를 보고 서비스 개시를 주저해 왔던 2003년 개정법 이전에 디지털화 된 주요 자료를 도서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후 계속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넷째, 이용자의 연구·조사 활동을 진작시키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 제도는 우리에게 빛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당장은 보상금제도 도입으로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지 몰라도,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시장교섭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저작권집중관리'의 본격적 도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법정허락제도의 확대는 과도기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체제의 법 구조하에서 디지털 정보의 복제·전송 서비스는 보상금과 이용허락이라는 이중적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보상금 제도를 세계 초유로 도입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발전적인 저작권 전략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2003년 개정저작권법 제28조 제5항(신설)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권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권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림 3> 보상금 지급으로 도서관간에 이용 가능해진 기존 디지털화 자료의 주요 유형

5) 도서관들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호간에 자유로이 디지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제5항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을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관 경우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 이를테면 발행된 1000부 모두가 판매용으로 발행되었거나 그 중 500부만이 판매용으로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의 열람 목적으로 이를 전송하는 행위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6) 종이기반 형태의 비판매용 도서관인 경우 다른 도서관의 열람 목적으로 한 디지털 복제·전송시 기간의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가.

제28조 제3항에 입각해 볼 때, 아날로그 형태의 비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는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전송에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경우는 기간의 제한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비판매용 아날로그 도서관의 저작재산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인 경우는 동조 제3항과 제4항, 제5항에 의거 연도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다른 도서관에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7) 디지털화 이후 디지털 복제물이 판매용으로 나온 경우에는 이를 계속 이용하여 도서관간 열람목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한가.

입법 취지와 제28조 전체 및 제5항을 종합해 볼 때 판매용 디지털 도서관이 신규 출시된 경우라면, 그 디지털 도서관으로 대체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판매용 디지털 도서관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서관간 전송에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서관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디지털 도서관이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른 도서관과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기 위하여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전송권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점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8)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를 자체 보존 목적으로 디지털화 한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의 열람 목적을 위하여 전송할 수 있는가.

자체 보존 목적으로 디지털화 한 도서관이 5년이 경과된 판매용 도서관인 경우라 할지라도 무상으로 전송할 수 없을 것이다. 제1항 제2호에 의해 디지털화에 대한 면책은 자체보존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서버에 저장하여 타 도서관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전송도서관에서의 복제·전송 행위에 대한 면책 적용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9) 도서관간 전송을 위한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의 범위는 제한되는가.

2003년 개정저작권법시행령(이하 개정시행

〈표 4〉 전송도서관 복제·전송에 관한 면책 적용 여부

도서 등 형태	복제·전송 유형		면책	비 고
도 서	비판매용	다른 도서관 전송 목적 디지털 복제 및 전송	○	① 열람 목적 ② 보관된 도서
	판매용	다른 도서관 전송 목적 디지털 복제 및 전송	○	① 열람 목적 ② 발행후 5년이 지난 보관된 도서 ③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다른 도서관 열람 외 목적 전송		X	이용허락의 대상
	안방서비스 목적 전송		X	이용허락의 대상
디지털 도서	비판매용	다른 도서관 전송	○	① 열람 목적 ② 보관된 디지털도서
	판매용	디지털 복제	X	이용허락 대상
		다른 도서관 전송	○	① 열람 목적 ② 발행후 5년이 지난 보관된 디지털 도서 ③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안방서비스 목적 전송		X	이용허락의 대상
2003년 개정법 이전 디지털화 된 저작권이 있는 도서	비판매용	다른 도서관 전송	○	① 열람 목적 ② 보관된 도서
	판매용	다른 도서관 전송	○	① 열람 목적 ② 보관된 도서 ③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다른 도서관 열람 외 목적 전송		X	이용허락 대상

령이라 한다)은 제3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개정하였다. 제3조의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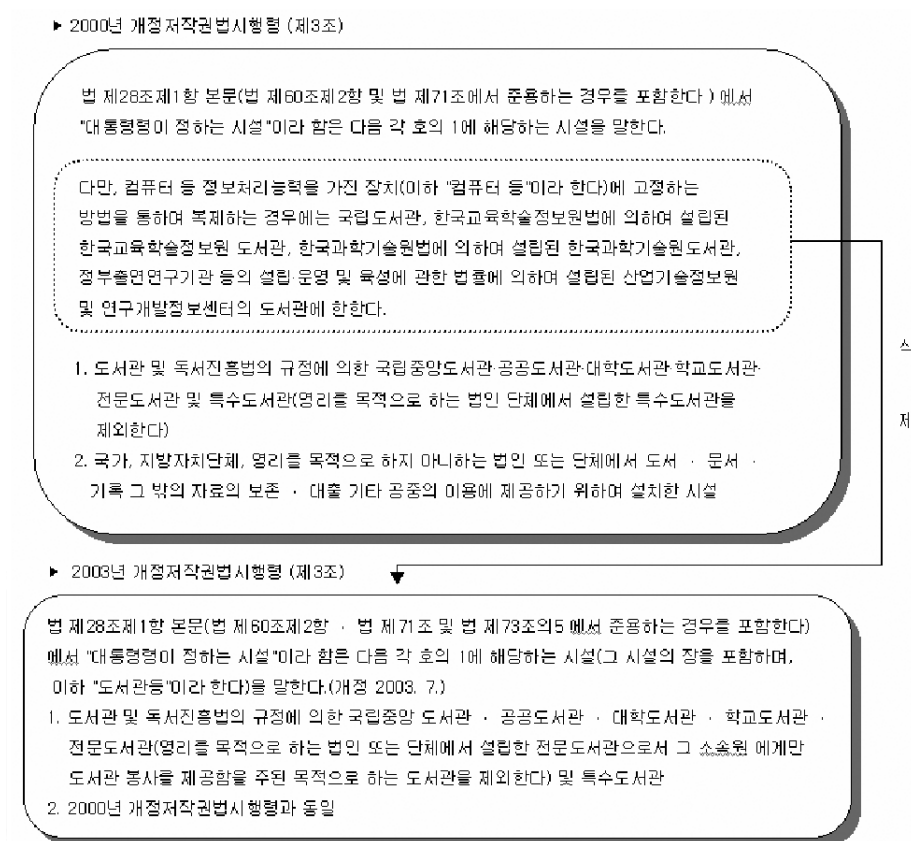
이처럼 이 번 개정시행령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2003년 4월말 현재 69개)¹⁴⁾만이 디지털화를 할 수 있게 제한한 2000년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디지털 복제 가능 시설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도서관에까지 디지털 복제가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는 그 존재 이유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한 바람직한 법적 조치이다.

3. 2 전송받은 도서관

1) 조사·연구를 위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열람 목적으로 복제·전송받은 디지털 도서 등의 일부분을 아날로그 형태로만 출력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가.

2000년 개정법 제28조 제1항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제외한 아날로그 환경의 도서등인 경우 아날로그 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

14) 이용훈. 2003.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방안", 국회도서관보, 40(5): 15-21.



〈그림 5〉 디지털 복제 대상 도서관의 범위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등이 디지털 도서 등을 전송받아 프린트 아웃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면책에 수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범규정의 모호함과 불합리성은 이용자의 조사·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도서관정보제공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003년 개정법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서관 정보제공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의 본문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부터 도서관 등은 개정된 본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위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관의 디지털 원문은 물론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원문의 일부분을 저작권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아날로그 형태로 출력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03년 개정법은 제2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아날로그 복제와 디지털 복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를 엄격하게 면책에서 제외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점은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우리가 명확히 인지해야

2003년 개정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03)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 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03)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3.)

할 사항이다.

그러면 아날로그 형태로의 출력을 허용 받게 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2003년 개정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도서 등’의 개념을 확대하여 ‘당해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명문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우리가 요구해 온 이용자의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 다른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꼬를 더 주었다는데서 큰 의의가 있다. 확대된 이 면책 부여는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다른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 서비스에서 디지털 원문의 프린트아웃 제공까지를 가능케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전송받은 디지털 원문 일부분의 프린트 아웃 제공은 이용자의 조사·연구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는가. 개정법은 이용자의 조사·연구 목적을 위한 경우 도서관이 아날로그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풀어 주되, 경제적 보상 의무를 부담 지우고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저작재산권자인 비판매용 디지털 도서를 전송받아 아날로그 형태로 출력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의 예외 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다.

개정법상 조사·연구 목적의 디지털 원문 일부분의 출력(복제) 행위에 대한 면책 적용 여부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조사·연구 목적의 디지털 원문 일부분의 출력에 관한 면책 적용 여부

전송받은 디지털 원문 구분	출력(복제) 유형	면책	비고
비판매용	디지털 형태	X	이용허락 대상
	아날로그 형태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판매용	디지털 형태	X	이용허락 대상
	아날로그 형태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국가, 학교 등이 저작재산권자인 비판매용 디지털 도서인 경우는 보상금 지급에서 예외.

2)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전송하거나 관외의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가.

개정법은 제1항은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를 아날로그 형태로 일부분을 출력하는 것만을 면책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만약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도서관에 전송하는 행위를 면책에 포함시킨다면, 저작권자나 출판권자로부터 이는 지나친 저작권제한이라는 강한 반대 급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법이 공익을 위하여 도서관에 면책을 부여하지만, 이는 제한된 일정한 조건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송받은 도서관 등은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를 타 도서관이나 관외의 이용자에게 전송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¹⁵⁾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서 도서관 상호대차를 할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법 행위가 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3)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보존 목적을 위한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가

2000년 개정법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아날로그 형태 도서 등을 자체 보존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였다. 이러한 모호함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정법은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의 단서를 개정하여 아날로그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복제의 면책 여부를 명확화 하였다.

개정된 본 규정에 따라 전송도서관 등은 보관하고 있는 아날로그 형태의 도서 등을 자체 보존용의 디지털 복제물로 자유로이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전자도서, CD-ROM, DVD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도서인 경우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기존 포맷의 변경이나 다른 디지털 매체로 변환할 수 없다. 다만, 비판매용의 디지털 도서¹⁶⁾는 자체 보존을 위해 다른 디

〈표 6〉 전송받은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의 전송에 관한 면책 적용 여부

전송받은 디지털 도서 구분	전송 유형	면책	비고
비판매용	다른 도서관 열람목적 전송	X	이용허락 대상
	안방서비스 목적 전송	X	이용허락 대상
판매용	다른 도서관 열람목적 전송	X	이용허락 대상
	안방서비스 목적 전송	X	이용허락 대상

15) 개정법은 '보관된 도서'에 국한하여 이를 다른 도서관의 열람목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

16) 비판매용 디지털 도서관 비매품으로 제작된 도서나 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도서를 말한다. 즉, 정가, 회원가, 가격은 출판사에 움의 등의 모든 대가 표시가 있는 디지털 도서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발간된 복제물 중 일부가 판매용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가 비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판매용 디지털 도서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다만 시장 가격을 합리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판매용으로 추정한다. 이영아. 2003.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 제도". 도서관 보상금 제도 설명회 자료집. pp. 5-23.

지털 매체로의 변환 또는 다른 디지털 포맷으로의 변환한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디지털 도서는 디지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은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목적은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이제 도서관들은 판매용의 디지털 도서 등은 적극 구매하고, 그렇지 않은 아날로그 형태의 도서 등에 한하여 디지털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작권자(출판권자 포함)와 도서관간의 상호 win-win 관계를 유지·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¹⁷⁾

그러나 전송도서관의 경우와 달리 전송받은

도서관은 개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송받은 도서를 자체 보존용의 디지털 복제물로 만들 수 없다. 보관된 도서 등의 확대된 개념은 동항 제1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혹시 이를 착각하고서 전송받은 도서 등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보존용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든다면 이 또한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된다. 전송받은 도서관에서 전송받은 디지털 도서의 자체 보존용 디지털 복제물 작성과 관련한 면책 적용 여부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4)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을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여 보존용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가.

2003년 개정저작권법 제28조제4조 (신설)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민간 투자나 시장형성의 방해 최소화

+

전자출판 산업 발전과의 조화 도모

<그림 4> 판매용 디지털 도서등의 디지털 복제 면책의 제한 목적

<표 7> 전송받은 디지털 도서의 자체 보존용 디지털 복제물 작성의 면책 허용 여부

복제 목적	전송받은 디지털 도서 구분	복제의 유형	면책	비고
자체 보존	비판매용	아날로그 복제	X	이용허락 대상
		디지털 복제	X	이용허락 대상
	판매용	아날로그 복제	X	이용허락 대상
		디지털 복제	X	이용허락 대상

17) 홍재현. 2002.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저작권 연구”. 정보관리연구, 33(4): 57-84.

개정법은 제28조 제1항 제3호, 제2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전송받은 도서 등을 활용하여서는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의 보존용 디지털 복제물을 일체 만들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8>과 같다. 이는 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존용 도서 등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¹⁸⁾ 도서관들은 이 점을 유념해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3 보상금 제도

1) 보상금 제도의 목적

도서관 보상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인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¹⁹⁾ 2003년 개정법의 도서관 면책에 도입된 보상금 제도의 목적은 <그림 5>와 같다.

2)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

도서관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다른 도서관등 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을 복제하는 경우
 - 도서관등에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CD-ROM 등으로부터의 프린트 아웃(단 출력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도서관등이 자체 구축한 DB로부터의 프린트 아웃
 -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의 프린트 아웃
- ②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 8> 전송받은 디지털 도서를 이용한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의 보존용 디지털 복제물 작성의 면책 허용 여부

복제 목적	전송받은 디지털 도서 구분	복제의 유형	면책	비고
구하기 어려운 도서의 보존 목적	비판매용	아날로그 복제	X	이용허락 대상
		디지털 복제	X	이용허락 대상
	판매용	아날로그 복제	X	이용허락 대상
		디지털 복제	X	이용허락 대상

전자도서관 구축·운영의 활성화

+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의 보전

<그림 5> 도서관 보상금제도의 목적

18) 한편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힘든 도서 등이 아날로그 형태의 도서인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물 상태로 우편으로 받아 복제물을 갖추는 행위에는 면책이 적용된다.

19) 이영아. *op. cit.*, pp. 5-23.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 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금 지급방법과 절차

저작권법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 시행령²⁰⁾은 제3조의 3을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도서관 등은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저작재산권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 2003년 10월 15일에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이러한 업무를 관리하는 저작재산권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보상금 지급일은 도서관이 복제·전송한 다음해 4월 30일까지이며, 복제·전송의 '이용 내역'²¹⁾과 함께 보상금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지급하면 된다. 한편 보상금 지급 방법은 개별 도서관 등과 저작재산권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월별 지급 등으로 정할 수 있다.

4)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

도서관 보상금 기준은 【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3-9호】로 2003년 7월 26일 관보²²⁾에 고시되었다. 도서관 보상금 기준 마련의 근거는 저작권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3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그 적용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이다. 2004년 7월 이후 적용될 기준은 새로 고시될 예정이다.

보상금 기준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http://www.copyright.or.kr>)에서 이해관계기관·단체와의 협의와 위원회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고시된 것이다.²³⁾ 도서관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9>와 같다.

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비판매용 도서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디지털 자료로부터 출력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판매용과 비판매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면당 소액의 보상금을 차등 부과시키고 있다. 더불어 보상금 기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명확히

2003년 개정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3(신설)
① 도서관등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출판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단체(이하 "저작재산권자단체"라 한다)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서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도서등을 복제·전송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보상금을 그 복제·전송의 내역과 함께 저작재산권자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20) 2000년 저작권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2003년 저작권법시행령은 2003년 7월 10에 대통령령 제18050호로 공포되었다.

21) 저작물 이용 내역에는 ISSN/ISBN, 단행본/정기간행물 구분, 단행본 서명/논문명, 저자명, 출판사, 발행연도, 유/무가지, 이용형태(현시(열람)/출력), 이용량, 보상금 액수 등이 포함된다.

22) 도서관 보상금 기준. <<http://gwanbo.korea.go.kr>>

23) 최경수. *op.cit.*, pp. 43-59.

〈표 9〉 도서관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력	전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 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 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정의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0〉과 같다.

한편 정부는 보상금 제도를 일선 도서관에서 곧바로 실시하기에 앞서 200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시범 실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끝난 200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서관들이 그토록 짧은 시범 실시 기간 내에 보상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상금 실시를 위한 예산을 편성·확보하며, 과금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다. 도서관인들의 불멘 목소리가 커지자 도서관 보상금 제도 시범실시 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²⁴⁾ 이 시범기간이 끝난 2004년 7월 1일부

터 도서관 보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원래의 계획대로 한다면 2004년 7월 1일부터 새로 보상금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바로 그 시기에 2003년에 고시된 기준에 의해 보상금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혹감과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이는 정부의 안일한 발상과 그에 따른 무책임한 정책 진행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일선 도서관의 전체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5) 보상금의 지급 주체

보상금의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 도서관인

〈표 10〉 용어의 정의

출 령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 송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1 면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파 일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

24) 2003년 12월 12일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주최한 도서관 보상금 제도 설명회에서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 제도, 국립중앙도서관 과금시스템 도입 방안, 도서관 보상금 제도로입에 따른 약정서(안)이 발표되었고 참석한 많은 도서관인과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가 아니면 도서관 이용자인가. 또는 디지털 정보를 전송한 도서관인가 아니면 전송받은 도서관인가.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전송받은 도서관이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디지털 정보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아 열람하거나 디지털 정보의 프린트아웃을 제공받은 이용자가 지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면책은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행위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행위는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를 위하여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출력이나 도서관간 전송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면책을 적용 받는 보상금 지급 주체는 디지털 자료를 전송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프린트 아웃하여 제공한 도서관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출력과 전송의 경우로 대분하여 보상금 지급의 책임관계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이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은 법적으로는 전송도서관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송도서관은 전송받은 도서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보상금의 확보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계약 시 전송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대한 전송 내역만을, 전송받은 도서관은 각각의 다른 도서관에 지불하여야 할 보상금과 그 내

역을 저작권단체에 제공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가. 보상금의 액수가 소액일지라도, 이용자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은 전통적으로 도서관의 무료 이용 원칙에 익숙해져 있는 이용자들에게 자칫 거부감을 느끼게 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의 원문을 전송받아 열람하거나 디지털 자료의 출력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이 보상금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다른 도서관 자료를 전송받아 열람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서관이 보상금을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자인 이용자가 그 전액 내지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비용 부담을 요청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보상금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 도서관측이 진지하게 논의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용자들로부터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지급되는데 어찌 도서관 보상금제도가 될 수 있느냐는 반문 내지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 보상금이라는 명칭은 도서관에서의 자료 이용에 따른 보상금이

<표 11> 보상금 지급 주체

구 분	책 입	근거 규정
전 송	전송을 행한 도서관 등	개정법 제28조 제5항
출 령	출력이 이루어진 도서관 등	개정법 제28조 제5항

라는 점에 걸맞으면서 도서관과 이용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보상금 징수와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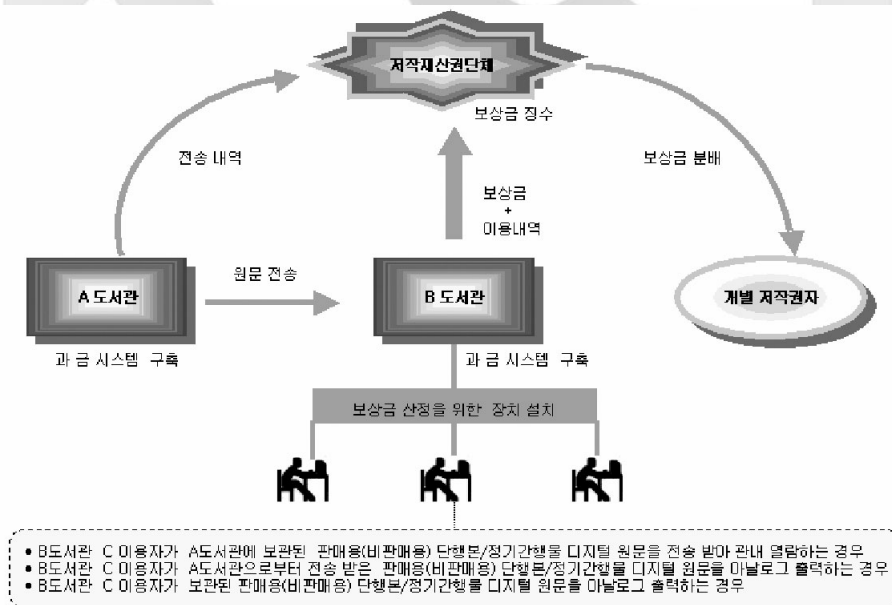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는 개정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3에 의거 저작재산권자단체로 지정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각각의 도서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고, 이를 개별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각 도서관들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 보상금 징수와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림 6>은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 시 일반적인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 관계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7) 보상금 제도 시행을 위한 과금시스템 구축
도서관들은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아날로그 출력의 이용량 제한, 판매용/비판매용,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의 구분에 따른 과금시스템을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003년 12월에 자체 개발한 과금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²⁵⁾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다른 도서관 등은 이를 모델로 하여 과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4 권리보호조치

개정법은 동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그림 6> 보상금 징수·분배 관계

25) 최경호. 2003. 12. “국립중앙도서관 과금시스템 도입 방안”. 도서관 보상금 제도 설명회 자료집. pp. 2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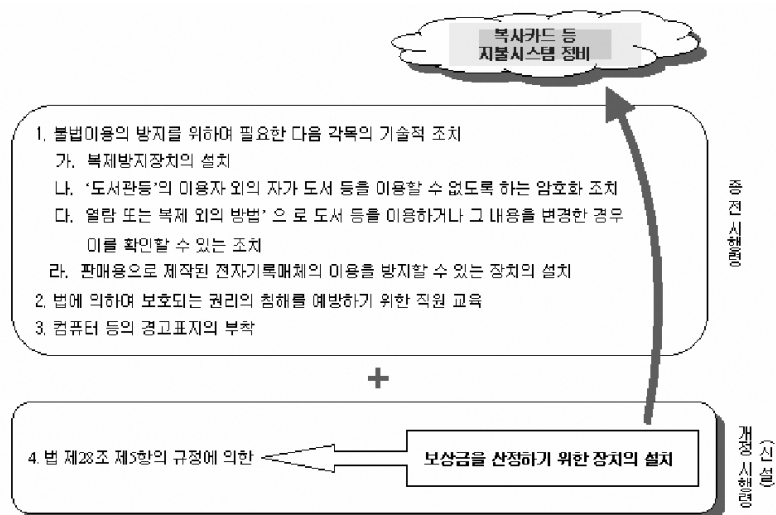
간의 복제·전송 시 열람 이외의 불법적인 디지털 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본 6항에 따라 도서관 면책 규정상 대통령이 정하는 필요한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이다. 즉 자체보존 목적으로 디지털 복제하는 경우, 도서관 내에서 열람 목적으로 디지털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의 열람 목적으로 디지털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위임 입법에 따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 시행령은 제3조의 2를 개정하여 새로운 권리 보호조치로 제4호를 신설하였다. 제4호에서는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서관들은 복사 카드 등의 지불시스템의 정비와 카드 리더기 등

의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해당 PC에 설치하는데 드는 추가비용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7>과 같다.

4. 면책 사유를 벗어난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도서관등은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선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도서관이 원하는 바들이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면책사유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 사유를 벗어난 경우는 저작권자로부터 전송권 또는 복제권 등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도서관 면책 사유를 벗어난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의 유형과 그 이용 허락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



<그림 7> 도서관이 취해야 할 권리보호 조치

음의 <표 12>와 같다.

이러한 경우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 도서관들이 일일이 저작자와 개별적으로 허락을 얻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그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과 관련한 권리처리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용료 분배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2000년 7월 1일에 설치하였다. 복사·전송권 집중관리기구로 설립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저작권자·출판권자로부터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이용자와 복사·전송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 후 회원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출판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²⁶⁾

따라서 면책 사유를 벗어난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를 공동 이용하려는 도서관들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이용하면 그 권리관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도서관들이 이용허락 관계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용한 현황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앞으로 도서관들은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적극 이용해야 할

〈표 12〉 도서관 면책 사유를 벗어난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 공동이용의 유형과 그 이용 허락 관계

도서관 면책을 벗어난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 공동이용의 유형	이용 허락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이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다른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 목적을 위해 전송하는 경우	전송권
디지털화 이후 디지털 복제물이 판매용으로 나온 경우에도 이를 계속 이용하여 다른 도서관의 열람목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송권
다른 도서관에서의 열람 목적 이외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전송하는 경우	전송권, 복제권
전송받은 디지털 도서를 다른 도서관의 열람 목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송권
전송받은 디지털 도서를 활용하여 조사·연구 목적을 위한 복제물의 일부분을 디지털 형태로 1인 1부 제공하는 경우	복제권
전송받은 디지털 도서를 활용하여 자체 보존용 디지털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	복제권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을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여 보존용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	복제권

26)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개별허락 계약의 사용료를 저작물의 종류와 복사 전송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있다(<http://www.copyright.or.kr>).

- 도서 및 학위논문
복사 : 1면당 5원 / 전송 : 1면당 10원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기간행물
복사 : 도서와 같음 / 전송 : 10면 기준 1건당 기본료 500원, 추가 1면당 10원
- 사진 미술 음악 저작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정함.(단, 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 복사 및 전송에 한함)

것이다. 반면에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도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보다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새로운 지식·정보의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규정이다. 국제적으로 도서관간 복제·전송이 면책으로 규율되는 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제규범(베른 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 본 연구는 저작권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03년 개정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제규범에서는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는 3단계 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과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

는 EU 지침에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② 우리 나라에서 도서관과 저작권법간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도서관간 복제·전송의 문제는 2003년 개정법에 의해 일단락 되었다. 이 번 개정법은 제28조 제3항, 제5항을 신설하여 다른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목적으로 발행 후 5년이 경과한 보관된 도서 등의 복제·전송을 허용하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세계 초유의 획기적인 법적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 후 5년이라는 연도 기준은 다소 인위적이다. 또한 보상금제도 도입은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시장교섭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고, 과도기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입법자들의 의도대로 그 과급 효과가 클 것인지, 도서관에서의 성공적인 수용을 세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③ 2003년 개정법은 '보관된 도서 등'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전송받은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의 일부분의 아날로그 출력은 허용하되 보상금을 지급의무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연구·조사를 진작시키고 도서관의 진일보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보상금은 2003년 개정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3에 의해 복제·전송한 다음해 4월 30일까지 복제·전송한 이용 내역과 함께 보상금을 저작재산권단체에 지급·공탁하면 된다. 또한 도서관의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은 문화관광부가 고시한 도서관 보상기준이 적용되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시범실시기

간을 거친 후 2004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는 저작권단체로 지정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도서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고 이를 개별관리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다.

⑤ 개정법은 동조에 6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간 복제·전송 시 필요한 권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개정저작권법 시행령은 개정법에 의거 제3조의 2에 제4호를 신설하여 도서관이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⑥ 면책 사유를 벗어난 도서관 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 이용의 경우는 이용허락의 대상이므로, 저작권자와의 권리처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 간 디지털 복제·전송을 규율하는 개정법에 대하여 도서관이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 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상금 부담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도서관이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재원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디지털 원문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이 각기 과금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 비용 면에서 국가적인 낭비이다. 표준화된 과금시스템의 모델을 개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각 도서관들이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담 수서 정책, 각 도서관의 특화·차별화된 DB 구축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디지털화 작업의 중복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④ 도서관들은 다른 도서관에 도서 등을 디지털 복제·전송 시 불법적인 복제 방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각 도서관들은 지불시스템을 정비하고 카드 리더기 등의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해당 PC에 추가 설치해야 할 것이다.

⑤ 도서관 간 복제·전송 시 저작권자(출판권자)와 상호 win-win 관계를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각 도서관들은 판매용의 디지털 도서 등을 적극 구매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⑥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도서관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서관들은 상호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들은 보상금 징수와 분배 업무를 관리하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의 약정서 체결 시 도서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 구체적인 내용, 책임관계 및 제한사항을 잘 검토·파악해야 할 것이다.

⑦ 개정법은 정보의 무제한한 공급과 그 조

절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 면책 조건이 복잡하고 엄격해졌다. 일선의 도서관 사서들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화된 저작권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과목 또는 특강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⑧ 대다수의 도서관 이용자들은 개정된 저작권법의 면책 규정이 무엇이며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또한 보상금은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모른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에게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⑨ 면책 사유를 벗어난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해 디지털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자 하

는 도서관들은 복사 전송권 집중관리기구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 도서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원문자료의 안방서비스이다.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서 도서관의 안방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관한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연구하고 도서관 전체의 의견을 응집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칭 '저작권연구도서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도서관협회를 주축으로 하여 문헌정보학 교수, 관종별 도서관 전문사서, 저작권 전문가,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